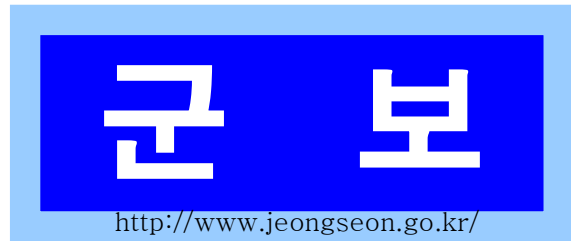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41호 2011. 5. 4. (수)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1-253호 분묘개장공고(2차).....	1
○ 정선군공고 제2011-254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적발통보, 고지, 독촉,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 정선군공고 제2011-257호 2011년 솔잎흑파리방제(나무주사) 사업 시행 공고.....	3
○ 정선군공고 제2011-259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5
○ 정선군공고 제2011-260호 201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7
○ 정선군공고 제2011-262호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공고.....	8
○ 정선군공고 제2011-267호 2011 조림지 풀베기사업 시행공고.....	10
○ 정선군공고 제2011-268호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시행공고.....	11
○ 정선군공고 제2011-269호 정선군 공립정선어린이집 재위탁 결정 발표.....	12
○ 정선군공고 제2011-272호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공고.....	13
○ 정선군공고 제2011-274호 2011년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공고....	15
○ 정선군공고 제2011-275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3
○ 정선군공고 제2011-276호 개인택시양수신청자 접수공고.....	24
○ 정선군공고 제2011-277호 2011년도 4월중 수시분(자동차,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26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3, FAX:560-2592)

정선군공고 제2011-253호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당해분묘의 설치자나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의 절차에 의거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분묘수	비고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산105	임	2기	

2. 개장사유 : 에코랜드 조성사업 짚와이어 시설부지 편입

3. 개장방법

- o. 유연분묘 : 연고자 협의후 개장
- o.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이전장소

- o. 정선군 여량면 남곡리(하늘공원)
- o. 화장후 납골당 안치

5. 공고기간 : 신문공고 게재일로부터 3개월

6. 신 고 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정선군청 녹색환경과(☎033-560-2346)

7.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1. 4. 20.

정 선 군 수

정선군공고 제2011-254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적발통보, 고지, 독촉,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사전통지), “도로교통법” 제161조, 동법시행령 제88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의하여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불명, 장기간 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04. 18.

정 선 군 수

1. 제목: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 독촉, 압류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 홈페이지 참조
3. 공고기간 : 2011. 04. 19 ~ 2011. 05. 03(15일간)
4. 공고내용 : 상기 과태료부과 대상자 및 납부의무자는 공고기간 내 과태료 납부 및 의견제출등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의견 및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 및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 및 가산금등에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5.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건축과(☎033-560-2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이의신청 제출처 : Fax) 033-560-2174,
☆ 우편: 233-87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정선군공고 제2011-257호

2011년 솔잎혹파리방제(나무주사) 사업 시행 공고

솔잎혹파리 피해임지 피해도 “중” 이상의 산림에 대하여 2011년도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사업을 실행하고자 사업추진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우편물이 반송된 대상산림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후 우리군에서 방제사업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사 업 명 : 2011년 솔잎혹파리방제(나무주사)사업
2. 사업기간 : 2011. 5. ~ 7. 30
3. 사업내용 : 솔잎혹파리 나무주사(포스파미돈)
4. 공고기간 : 2011. 4. 20 ~ 2011. 5. 9(20일간)
5. 기타사항
 - 위 기간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사업 추진을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림사업을 시행할수 있는자에게 대행하여 실행함.
 - 본 공고에 이의가있을 경우 공고기간내에 우리군 산림정책과 전화(033-560-2167) 또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 바랍니다.
6. 사업대상지 내역 : 붙임 참조

붙 임 : 2011년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사업 대상지 2부.

2011. 4. 20.

정 선 군 수

2011년 솔잎혹파리방제(나무주사)사업 대상지(종괄)광하지구

읍면별	리	필지수	대 상 면 적(ha)		비 고
			지적	대상면적	
정선	봉양	55필지	405.88	180.81	
	북실	11필지	175.36	89.14	
	광하	104필지	248.01	220.00	
	용탄	102필지	143.22	115.00	
	회동	17필지	70.02	61.52	
	굴암	29필지	75.38	64.06	
계	6	318필지	1,117.87	730.53	

2011년 솔잎혹파리방제(나무주사)사업 대상지(종괄)덕송지구

읍면별	리	필지수	대 상 면 적(ha)		비 고
			지 적	대상면적	
정선	덕송	103필지	270.46	160.41	
	애산	79필지	332.57	232.43	
	덕우	34필지	89.12	76.80	
	신월	57필지	141.22	115.86	
	여탄	16필지	31.14	23.30	
계	5	289필지	864.51	608.79	

정선군공고 제2011-259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1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안내

- 열람기간 : 2011년 4월 20일 ~ 5월 9일
- 열람장소 :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및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과표팀
- 열람대상 : 119,329필지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원)

○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1년 4월 20일 ~ 5월 9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및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과표팀
- 제출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의견제출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전국의 땅값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50만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11.1.1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를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의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군청 세무회계과 과표부서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조사된 땅값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재산세·취득세·등록세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로 활용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등에 사용됩니다.

정선군공고 제2011-260호

201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및 2011년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 4. 20.

정 선 군 수

1. 제 목 : 201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 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1. 04. 20. ~ 05. 04(15일간)
4. 공고대상 및 내역 : 홈페이지 참고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강원도 정선군 녹색환경과(☎ 033-560-2347)
6.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채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선군공고 제2011-2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그 사실을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이사감.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 33조 및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4. 25.

정 선 군 수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1. 04. 25 ~ 2011.05.09.(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 24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이사감.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 정선군청 세무회계과(033-560-2293)로 연락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 3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대상자 : 별첨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본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소	압류물건	반송사유
신영건설 (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정선군고한읍고한리산261-15 대원주택1-103,1-105	수취인부재
김철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49-10	폐문부재
이호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529-10	보관기간경과
김연정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정선군사북읍사북리294-3 사북선명2차(아)201-303	폐문부재
최윤상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522	이사감
박기풍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두성리 531	이사감
박재홍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정선군고한읍고한리산210	이사감
김영분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산109	폐문부재
엄재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3-28	폐문부재
허섭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강원도태백시문곡동119 유브리안(아)102-803호	수취인부재
이장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정선군사북읍사북리294-3 사북선명2차(아)201-1203	수취인불명
천순임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정선군사북읍사북리302 사북선명(아)101-1408	이사감
김정자	경기도 평택시 독곡동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118	폐문부재
최병도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4-97	이사감
고민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대해리 산114-1	수취인불명
신태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서울특별시송파구거여동61-11 주성(아)201호	이사감
신동춘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화전리 96-37	이사감
노은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정선군고한읍고한리142 정선리조트731호	폐문부재
박선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정선군 정선읍 북설리 산83-2	폐문부재
(주)신진디 엔씨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산277	주소불명
경경자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정선군 화암면 북동리 300,305	수취인불명
김오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상방리 산176	폐문부재
조미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278 구로두산위브 101-1802	이사감

정선군공고 제2011-267호

2011 조림지 풀베기사업 시행공고

2011년도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산림소유자에게 사업이행신고 및 사업대행의 통지를 요청 하였으나 일부 산주의 소재불명, 수취인 미거주, 무응답 등의 사유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1. 4. 27.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2011년도 조림지 풀베기사업
2. 사업내용 : 조림지 풀베기
3. 사업대상지 : 조림지 풀베기사업 대상지 필지별 내역 홈페이지 참조
4. 사업기간 : 2011년 6월 ~ 9월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6.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 가.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구두 또는 전화)
 - 나. 위 공고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사업추진
7. 문의사항은 정선군청 산림정책과 산림조성팀(☎033-560-2445)으로 문의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11-268호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시행공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산림소유자에게 사업대행의 통지 및 동의를 요청 하였으나 일부 산주의 소재불명, 수취인 미거주, 무응답 등의 사유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1. 4. 27.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2. 사업내용 : 조림목 및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형질 불량목 제거 등
3. 사업대상지 : 홈페이지 참조
4. 사업기간 : 2011년 5월 ~ 2011년 12월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6.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 가.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구두 또는 전화)
 - 나. 위 공고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사업추진
7. 문의사항은 정선군청 산림정책과 산림조성팀(☎033-560-2445)으로 문의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11-269호

정선군 공립정선어린이집 재위탁 결정 발표

2011. 4. 29

정 선 군 수

정선군 공립정선어린이집 재위탁 운영자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 결정대상자

- 정선어린이집 시설장 : 김경우
- 근무지 : 공립정선어린이집

2. 기타사항

수탁자는 등록기간 내 본인이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등록기간은 추후 통지

정선군공고 제2011-272호

공시송달공고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그 사실을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이사감.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 33조 및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4. 28.

정 선 군 수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1. 04. 28 ~ 2011.05.12.(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 24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이사감.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 정선군청 세무회계과(033-560-2293)로 연락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 3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대상자 : 홈페이지 참조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소	압류물건	총채납액	반송사유
김명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산242	110,880	폐문부재
김금자	강원도 정선군 남면	정선군남면무릉리590-1 무릉아파트 4-305호	211,920	폐문부재
고미정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정선군 남면 광덕리 442,720	130,310	폐문부재
최광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경동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435-2	174,390	폐문부재
전갑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608	177,600	폐문부재
황정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119-1	123,970	폐문부재
김금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832-14	123,050	폐문부재
조판수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730-3	96,680	폐문부재
신환선	강원도 정선군 남면	정선군 남면 유평리 710-3	104,450	폐문부재
배정국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강원도태백시황지동677 영조아름다운나날 101-301호	179,090	폐문부재
방윤호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정선군 남면 무릉리 259	2,307,040	폐문부재
박경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군정선읍북실리772-2 북실(아)101-203호	174,990	폐문부재
이기옥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624-1	147,450	폐문부재

정선군공고 제2011-274호

2011년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공고

우리군에서는 평생학습 저변확대를 위하여 관내 평생학습 기관, 시설, 단체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 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원 하고자 「2011년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5. 2.

정 선 군 수

1. 공모 목적

가. 정선군 지역내에서 창의적의고 독창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평생학습기관(단체)의 우수프로그램을 선정·지원하여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

나. 군민의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참여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공모 기간 : 2011.05.02.~05.16 (15일간)

3. 신청 및 지원 대상

가. 신청대상 : 정선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평생학습 기관, 단체 및 비영리법인

나. 사업추진기간 : 2011. 5월~11월

다. 사업지역 : 정선군 관내로 한함

라. 지원내역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홍보비 등 학습활동을 위한 지원경비

※ 식사비, 교통비, 간식비, 시설비 등은 사용불가

마. 지원대상 및 금액 : 4~7개 이내 단체, 20,000천원

- 1기관(단체)당 1프로그램 지원을 원칙으로 함(미달시 추가가능)

- 지원금액은 3백만원~5백만원 까지 차등지원

바. 지원 프로그램

구 분	분 야	학습 및 활동 내용
기관·단체별 특 성 화 프 로 그 램	정 선 특 화	◦ 정선만의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 (정선아리랑등) ◦ 정선 사랑, 정선 바로알기 프로그램(역사,문화등)
	소 외 계 층	◦ 저소득층, 노인, 장애우 자활교육, 취업교육, 장애아동 성장지원 프로그램, 외국인 지역사회문화적응프로그램 등
	평 생 학 습 진 흥	◦ 군민교육, 지역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 관광정선 및 환경의식 고취등 평생학습 진흥 프로그램
	기 타	평생학습기관·단체특성화 사업 및 평생학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등

사. 지원조건

-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최소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최소 10명 이상의 학습자를 모집하여 진행
- 지원액의 10%이상 대응투자 필수

아. 제외대상

<제 외 대 상>

- 일회성 행사, 일회성 교육, 여행성 사업
- 보조금으로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 단체, 기관의 정기총회, 행사 등 단체 및 기관의 단합도모를 위한 내부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사업
- 정치적 목적과 특정 종교활동을 위한 사업

4. 신청서류

- 가. 사업신청서 1부. (별첨)
- 나. 사업계획서 1부. (별첨)
- 다. 기관,단체 소개서 1부. (별첨)

5. 접수방법

- 가. 접수기간 : 2011.05.02.~05.16(15일간), 공휴일 제외
- 나. 접수방법 : 정선군청 자치행정과 방문 및 우편제출
- 다. 문 의 처 : 정선군청 자치행정과 교육지원담당(☎560-2186)

6. 심사 및 선정

- 가. 심사방법 : 서면 심사, 필요시 현지실사 병행
- 나. 심사선정기준
 - 프로그램 계획의 타당성, 실효성, 독창성, 창의성
 - 프로그램의 지역특색 반영, 지역사회 파급효과
 - 수혜범위와 프로그램수행능력(조직, 학습시스템구축등)
 - 실행예산계획의 타당성 및 자부담 비율
 - 그간 평생교육 운영실적 및 평생교육기관 지정여부 등

다. 심사위원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라. 결과통보 : 개별통지 및 군청홈페이지 게재

7. 기타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거나, 본 사업의 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조치 함.
- 나. 사업완료 후 즉시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2011년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사 업 신 청 서

운영 프로그램명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주 소			총 회원 수	명
	전 화			FAX	
	대표자	휴대폰		e-mail	
사업기간	2011. 5월 일	총 학습일수		일	
	~ 월 일	총 학습자수		명	
사업내용	○ ○ ○ ○				
사 업 비	총 천원	보조금		천원(%)	
		자체경비 부담		천원(%)	

2011년도 정선군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붙임과 같이 신청하며, 상기 사업에 선정될 경우 관련법령, 사업계획서, 정선군에서 정한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여 소정의 사업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신청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2011. 4 . .

신청단체 :

신 청 자 : (인)

정선군수 귀하.

5. 사업추진전략

☐ 학습자 모집 및 관리계획

○ 학습자 모집 및 홍보전략

○ 학습자 관리계획

☐ 강사 수준 및 확보방법

○

※ 강사 현황

연번	성명	경력 및 자격증	연락처	소속기관	비

☐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확보 방안

○

6. 성과 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

○ 사업결과 평가계획

○ 사업 종료 후 지역 연계 및 활용방안

7. 실행 예산계획

(단위 : 천원)

지출항목	산출내역	총 사업비 (천원)			비고
		계	보조금	자체부담	
총 계					
강사비					
교재비					
실습비					
홍보비					
운영비 (소모품비등)					

8. 2010년 사업실적

☐ 프로그램 운영실적

○

☐ 지역사회 환원활동 실적

○

회원 (학습자) 명단

순번	성명	직 책	휴대폰 번호	비 고
1		회 장		
2		부회장		
3		총무		
4		회원		
5				
6				
7				

기관(단체) 소개서

기관(단체)명				
주소	□□□-□□□			
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E-mail	
기관연혁	○ 평생교육기관 지정여부 (지정근거 첨부) 포함 ○			
인력현황				
기구현황	※ 필요시 조직도 작성			
2010년도 예산집행내역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비율 명시(회비수입, 기부금, 보조금, 사업수익 등) (별첨 가능)			
2011년도 예산운영계획				
2010년도 사업실적	○ ○ ○ ○ ※ 평생학습 관련사업만 기재 (별첨 가능)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붙임5)

기관(단체) 활동 실적

○ 기관(단체)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최근 1년 이내의 사진, 언론보도자료, 기관(단체)의 소개자료 등을 첨부하고 간략하게 설명 해주세요. (평생교육 관련 실적)

활동 실적 자료	자료 요약

정선군공고 제2011-275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의 규정에 의거 이 규정을 위반(보증가능금액실효)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등】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앞서 『동법』 제86조 【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처분의사전통지】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장기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4항 및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 04. 29.

정 선 군 수

1. 공시송달대상

상 호 (대표자)	법인 등록번호	업 종 (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사유	예정된 처분내용
동산건설(주) (이민구)	144911- 0006327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정선2006-13-01)	강원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1096-21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확인서실효)	전문건설업 영업정지6월

2. 공고기간 : 2011. 04. 29. ~ 2011. 05. 13(15일)

3. 청문일정

가. 청문일시 : 2011. 05. 12(목) 14:00~

나. 청문장소 : 정선군청 2층(본관) 청문감사실

4.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

5. 청문시 유의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문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정선군청 건설방재과(☎ 033-560-21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11-276호

개인택시양수신청자 접수공고

정선군 개인택시지부로부터 개인택시 양도·양수 신청에 따른 양수신청자 접수공고 의뢰가 있어 개인택시를 양수 받고자 하는 기본자격을 갖춘 신청자를 접수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지정기일까지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4. 29.

정 선 군 수

1. 접수기간 : 2011. 4. 29~ 2011. 05. 13 (15일간)
2. 접수장소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3. 양도대상차량
 - 소 유 주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0-1(12/4), 이만석
 - 차량번호 : 강원51바1110호
4. 접수대상 : 개인택시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정선군 관내 거주자 중 다음 조건을 갖춘 자임
 - 가. 양수 기본자격 대상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 1) 운전경력
 - 가)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운전경력자
 - 접수일 현재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나) 자가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경력자
 - 접수일 현재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단, 타인에게 고용되어 운전한 자 경력에 한함)
 - 다) 사업용 ,자가용 및 건설기계 운전경력 합산자
 - 접수일 현재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단, 자가용 경력은 타인에게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에 한하며, 그 경력을 1/2로 환산적용,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시점부터 접수일까지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1),2),3) 항 공통적용】
 - 2) 거주기간 등
 - 가) 공고일로부터 정선군 관내에서 과거 1년간 6개월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
 - 나) 공고일로부터 정선군 관내에서 주민등록상 과거 6개월 이상 거주 사실이 있는 자

나. 완화적용대상자(정선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4조)

1) 운전경력

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건설기계 포함)

－ 접수일 현재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나)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자

－ 접수일 현재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단, 타인에게 고용되어 운전한 자 경력에 한함)

다) 사업용 및 자가용 운전경력 합산자

－ 접수일 현재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단, 자가용 화물, 건설기계경력은 타인에게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에 한하며, 그 경력을 1/2로 환산적용,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운전시점부터 접수일까지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1),2),3)항 공통적용】

2) 거주기간 등

가) 공고일로부터 정선군 관내에서 과거 1년간 6개월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

나) 공고일로부터 정선군 관내에서 주민등록상 과거 6개월 이상 거주 사실이 있는 자

5. 접수 제외 대상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제49조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자 .

6. 구비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1부

－ 자가용경력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차량등록원부, 기타입증서류

나.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마.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원본지참)

7. 접수결과 조치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격요건 등)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 및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전한 기간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에서 제외합니다.

나. 접수된 신청자 명단은 개인택시정선군지부(☎592-2580)로 통보하게 되며, 개인택시 양도자와 계약에 의하여 개인택시를 양수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건축과(☎560-2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11-277호

공 시 송 달

- 성 명 : 신 용덕 외 7인(“별첨”)
- 주소또는거소 : “별첨”
- 서류의 명칭 : 2011년도 4월중 수시분(자동차,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 서류의 내용 : 2011년도 4월중 수시분(자동차,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위의 서류를 2011년 04월 10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사무소가 불분명하거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변경된 납기일인 2011년 05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5. 02.

정 선 군 수

공시송달 내역서

발송지	개인(법인)명	과세물건	공고사유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25-8 (1통5반)	신용덕	80버6306(비영업용,적재정량:500) 3월중 수시분(양도) 일할계산 부과분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47-3 동원탄좌동원아파트 차동 303호 (11통19반)	김복만	37버6335(비영업용,배기량:1998) 3월중 수시분(양도) 일할계산 부과분	수령거부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259-2 4/5	이상국	강원80노3249(비영업용,적재정량:1000) 3월중 수시분(양도) 일할계산 부과분	수령인없음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423-9 (2통2반)	윤순애	09루6460(비영업용,배기량:796) 3월중 말소분 일할계산 부과분[차령경감율:50%]	수령인없음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산 209-1	주식회사진영씨앤	2007년 귀속 법인세((주) 대광건설)	수령인없음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760-1 월드프라자 801	(주)나눔	2010년12월귀속((주)나눔) : 근로소득	이사감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760-1 월드프라자 801	(주)나눔	2010년11월귀속((주)나눔) : 근로소득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1096-21	동산건설주식회사	2010년07월귀속(동산건설 (주)) : 근로소득	수령인없음